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8.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8월 12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5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5조의3)
- 자전거 통행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14조)
-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통행 등의 시설 운영에 대해 구체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정의를 규정.
  - 안 제2조의2는 자전거도로의 구분 조문 신설.
  - 안 제3조는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 우선 설치 규정.
  -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신설.
  - 안 제14조는 자전거 통행의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15조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 검토 결과
  - 동 조례는 우리 구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관리 및 고시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함.
  -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의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빈번하여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임. 자전거 전용도로의 우선설치와 안전 통행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이용제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 지정 등의 체계적인 운영 방법 강화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서울특별시의 25개 전 자치구가 해당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으며 광진구의 경우 한강과 중랑천을 끼고 있어 영등포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 인용하여 2022. 12. 27. 전부개정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4.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88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24. 8. 26.

제안자: 이예찬 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법률에는 근거가 있으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내용은 자칫 공유산업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전국 또는 서울시 공통의 표준 시설규정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정함.

## 2. 수정내용

- 안 제5조의3제4항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lt;신 설&gt;</p>	<p><u>제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u>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영등포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u>제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 ③ (개정안과 같음)</u></p>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8
----------	-----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이성수, 유승용, 이순우  
남완현 의원(4인)

##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라.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5조의2)
- 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5조의3)
- 바. 자전거 통행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14조)
- 사.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제15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8. 19. ~ 8. 23.)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자전거 등”이라 한다)만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通行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3조 중 제6항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정비사업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장에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영등포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외부의 위해(危害)요소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 그 지역에는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나거나 뒤를 따라갈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해서는 안 되고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는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u>“영륜이자전거”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5.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u></p> <p><u>제2조의2(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u></p> <p><u>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자전거 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u></p> <p><u>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u></p>

제3조(구청장의 책무) (생략)

<신설>

<신설>

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신 설>

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영등포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14조(영롱이자전거의 비치·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영롱이 자전거를 비치·운영할 수 있다.  
②영롱이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신 설>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외부의 위해(危害) 요소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 그 지역에는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제15조(영롱이자전거의 변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보호해야 한다.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나거나 뒤를 따라갈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해서는 안 되고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는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15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  
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